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4.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4.4.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2018.4.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조 태 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나.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다. 주민자치회 정원 및 위원 구성 (안 제5조 ~ 제9조)

라. 주민자치회의 운영(안 제13조~ 제19조)

마. 자치계획(안 제20조 ~ 제21조)

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안 제22조~제23조)

3. 검토보고 (유준상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실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과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 및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선정과 위촉,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임기와 의무, 위원선정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으로 자치회장, 감사, 간사 선임의 내용 및 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총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결정 및 효력, 자치계획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주민자치회 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미비점인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소극적인 주민 참여 방식을 다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에 다양한 주민참여 조직을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우리구 5개동을 포함하여 13개구 65개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2022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본 조례 제정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시범사업 동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여 전동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시행착오를 격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승계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동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규정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